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17일, 조지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 국회(임사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라 한다) 기반의 지역별·분야별 기후변화 예측정보 등 영향정보를 추가하여 이를 활용하

도록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온실가스·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함.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책 마련 시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그 활용 현황 파악 및 점검을 위한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개정안은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활용 의무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책에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표준시나리오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실태조사 명칭을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